

# 9.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1999. 10. 2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33조의6, 영 제34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복수 예비가격”이라 함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비(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제외한다)로 산출한 감리대가의  $98 \pm 2\%$  범위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자 결정 및 감리자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제3호의 복수 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감리자의 모집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①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의 경우에도 공사착공이 3월 이상 지연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할 수 없다고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될 수 있다.

1.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

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

-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2. 주택건설공사의 건축·토목·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자(이하 “보조감리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에 적합한 자

(1) 토목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2) 건축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3) 기타 설비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중 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중 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

력·경력자. 다만, 전기·통신 또는 소방분야중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감리자지정권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의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감리자 모집공고는 7일 이상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낙찰자 결정방법·사업내역·용모서류·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한다)자격 및 실적 등의 제출서류 및 접수기한(제출서류중 자격증사본·학력증명서·재무제표 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한다)
2.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감리자 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자의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

점(감리자 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수 예비가격

5.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추첨일시에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한 감리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6. 주택건설사업비[대지비, 주택건설공사비(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의 공사비는 제외한다), 전기공사비, 소방공사비, 정보통신공사비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7. 기타 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건설감리협회장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에게 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자 지정신청)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리비입찰서(밀봉하여 표지에 “감리비입찰서”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

### 제3장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제7조(적격심사)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찰가격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감리자의 지정)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점이 7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7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7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75점에 가장 근접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수행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역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역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이 많은 자

③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감리자 지정 현황, 주택건설공사 규모 및 입찰금액을 감리자·사업주체·한국건설감리협회장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9조(사실확인)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 지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감리자의 배치) ①감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해당공사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은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

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감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 또는 감리업무수행실적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감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지정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감리자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을 취소 받은 자 및 감리비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가리 계약을 하여 적발된 자(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 계약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부정행위 감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정행위 일자·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관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인 경우 : 대한 건축사협회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인 경우 : 한국 건설감리협회장

④대한건축사협회장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대한건축사협회장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은 감리자지정권자가 부정행위 감리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리자지정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감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일부부터 1년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관련)

1. 총괄

구 분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당해용역 기술능력	20점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80점	70점	5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text{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20\text{점}</math></li> <li>·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li> </ul>
입찰가격	8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li> <li>· <math>\text{평점} = 80 - 5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right  \times 100</math></li> <li>·   는 절대값 표시임</li> <li>·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li> <li>·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li> <li>·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li> </ul>
계	100점	

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math>\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30\text{점}</math></li> <li>·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li> </ul>
입찰가격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li> <li>· 평점 = <math>70 - 3 \times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math></li> <li>·    는 절대값 표시임</li> <li>·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li> <li>·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li> <li>·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li> </ul>
계	100점	

다.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math>\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50\text{점}</math></li> <li>·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li> </ul>
입찰가격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li> <li>· 평점 = <math>50 - 2 \times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math></li> <li>·    는 절대값 표시임</li> <li>·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li> <li>·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li> <li>·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li> </ul>
계	100점	

라.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math>\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70\text{점}</math></li> <li>·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li> </ul>
입찰가격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li> <li>· 평점 = <math>30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right  \times 100</math></li> <li>·    는 절대값 표시임</li> <li>·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li> <li>·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li> </ul>
계	100점	

※ 비고 : 당해 용역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부표와 같다.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1. 총괄

가. 평가점수 : 100점(나항, 다항을 합한 점수가 100점을 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나.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소 계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 재정상태건실도	14	· 감리자의 재정상태(재무제표증명원)
나. 감리업무수행실적	13	· 감리업무 수행한 연면적의 합계
다. 행정제재 여부	10	·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라. 설계용역수행여부	3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수행 여부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마. 가점	(9.5)	
- 상훈가산	3	· 가산 배점
- 품질가산	1.5	· 가산 배점
- 지역가산	5	· 가산 배점
바. 부당행위 감리자 감점	(-5)	· 감점 배점

다. 감리원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소 계	60	
1. 책임감리원	30	· 가점은 별도
가. 해당분야등급	18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나. 감리업무수행실적	10	· 감리업무 수행실적
다. 행정제재 여부	2	·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라. 상훈가산	2	· 가산 배점
2. 보조감리원(3명)	30	· 감리원 1인당 각 10점, · 가점은 별도
가. 해당분야등급	6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나. 감리업무수행실적	3	· 감리업무 수행실적
다. 행정제재 여부	1	·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라. 상훈가산	2	· 가산 배점

2. 분야별 평가방법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1. 감리자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 재정상태 건 실 도	14	· 유동자산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높은 순으로 배점(7)				
		· 배점기준				
	기 준	상위10% 이상	10%미만 30%이상	30%미만 70%이상	70%미만 90%이상	90%미만
	배 점	7	6.3	5.6	4.9	4.2
	14	·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이 낮은 순으로 배점(7)				
		· 배점기준				
기 준	상위10% 이상	10%미만 30%이상	30%미만 70%이상	70%미만 90%이상	90%미만	
배 점	7	6.3	5.6	4.9	4.2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13	· '94. 8. 이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공동주택이외 일반건축물은 80%인정)을 준공 또는 착공수행중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배점				
		· 배점기준				
		기 준	상위10% 이상	10%미만 30%이상	30%미만 70%이상	70%미만 90%이상
배 점	13	11.7	10.4	9.1	7.8	
다. 행정제재 여 부	10	· 최근 1년간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등 처벌을 받은 기간 또는 벌점에 따라 배점				
		· 배점기준 ※( )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불실벌점				
		구분	없음	2개월미만 (2점미만)	4개월미만 (5점미만)	6개월미만 (10점미만)
배점	10	9	8	7	6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라. 설계용역 수행여부	3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감리자				
마. 상훈가산	(3) 가점	· 최근 1년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령등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축물의 감리와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복수표창의 경우는 최고훈격의 표창에 대해서만 점수부(감사장, 공로장은 배점대상에서 제외)				
		· 배점기준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없음
배점	3	2	1	0		
바. 품질가산	(1.5) 가점	· 최근 3년간 우수업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 점수 부여				
		· 배점기준				
		구분	ISO인증 지정	신기술 지정	우수용역업자 지정	
		배점	0.5	0.5	0.5	
- 신기술지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를, 우수용역업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함						
사. 지역가점	(5) 가점	· 감리자지정권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한하여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지역 가점범위를 정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 배점기준				
		구 분			배 점	
공동주택의 건설 지역이			5			
-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특별시·광역시장의 감리자						
- 도인 경우 해당 시·군지역의 감리자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구 분	배 점
		공동주택의 건설 지역이 도인 경우 도관할 시·군 중 당해 건설공사 지역외의 지역의 감리자	2
아. 부정행위 감리자에 대한 감점	(-5)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감리자</li> <li>- 당해 감리자 지정공고시 공고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다.</li> </ul>	

나. 감리원

나-1. 책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30	· 가점은 별도				
가. 해당분야 등 급	18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 점	18	16	14	12
- 건축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0.3점을 가산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8. 이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령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개월수(공동주택외 일반건축물은 80%인정)가 많은 순으로 배점</li> <li>·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당해 소속기관이 시행하</li> </ul>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p>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기간은 공동주택 100%, 일반건축물 80%를 인정</p> <p>· 배점기준</p>					
		기 준	상위10% 이상	10%미만 30%이상	30%미만 70%이상	70%미만 90%이상	90%미만
		배 점	10	9	8	7	6
다. 행정제재 여 부	2	<p>· 최근 1년간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 처벌을 받은 기간 또는 벌저에 따라 배점</p> <p>· 배점기준 ※( )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불실벌점</p>					
		구분	없음	2개월미만 (2점미만)	4개월미만 (5점미만)	6개월미만 (10점미만)	6개월이상 (10점이상)
		배점	2	1.2	0.6	0.2	0
라. 상훈가산	(2) 가점	<p>· 최근 1년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령등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축물의 감리와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복수표창의 경우는 최고훈격의 표창에 대해서만 점수부(감사장, 공로장은 배점대상에서 제외)</p> <p>· 배점기준</p>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없음	
		배점	2	1.5	1	0	

나-2. 보조감리원

- 3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배점은 적용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1.5를 곱한 값으로 평점하며,  
“다. 행정제재 여부”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점수부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10	· 가점은 별도				
가. 해당분야 등 급	6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 점	6	5	4	3
		- 건축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1인당 각 0.15점을 가산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3	· '94. 8. 이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령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개월수(공동주택이외 일반건축물은 80%인정)가 많은 순으로 배점				
		·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당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기간은 공동주택 100%, 일반건축물 80%를 인정				
		· 배점기준				
기 준	상위10% 이상	10%미만 30%이상	30%미만 70%이상	70%미만 90%이상	90%미만	
배 점	3	2.5	2	1.5	1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다. 행정제재 여 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간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 처벌을 받은 기간 또는 벌점에 따라 배점</li> <li>· 배점기준 ※( )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불실벌점</li> </ul>					
		구분	없음	2개월미만 (2점미만)	4개월미만 (5점미만)	6개월미만 (10점미만)	6개월이상 (10점이상)
		배점	1	0.6	0.3	0.1	0
라. 상훈가산	(1)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령등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축물의 감리와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복수표창의 경우는 최고훈격의 표창에 대해서만 점수부(감사장, 공로장은 배점대상에서 제외)</li> <li>· 배점기준</li> </ul>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없음	
		배점	1	0.6	0.3	0	

나-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뒷면)

구비서류		
감리자 (회사)	① 재정상태 견실도	재무제표증명원(사업자등록세무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년도에 발행한 것,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등록시 또는 공고일 이후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것)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94. 8. 이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주실적증명서
	③ 행정제재 여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 설계용역 수행여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⑤ 상훈 증명서	최근 1년간 해당 행정기관의 상훈수여 증명서
	⑥ 품질가산	최근 3년간 해당업체 지정증명서
감리원 (책임 감리원 포함)	⑦ 자격증 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⑧ 학력 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⑨ 경력 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⑩ 감리업무 수행실적	'94. 8. 이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 경력증명서
	⑪ 행정제재 여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⑫ 상훈 증명서	최근 1년간 해당 행정기관의 상훈수여 증명서
<p>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li> <li>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li> <li>3. 대한건축사협회</li> </ol> <p>※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p>		



◎ 중소기업청고시제1999-19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류에 의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고시(중소기업청고시 제199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20일

중소기업청장

### 제3장 중소기업협동화 지원

제14조(협동화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참가업체수등) ①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협동화 실천계획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일 것

제16조(추진주체) 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

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추진주체를 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들이 협동화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위 각호 이외의 자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추진주체는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추진주체가 제1항 각호의 추진주체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 자
2. 추진주체가 추진주체 구성원외의 자 중에서 선임한 자로서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설치등) ①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사장은 필요에 따라서 공단지역본부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지역본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담당국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대전·충남지역은 본청 담당사무관)
2. 해당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과장
3.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
4. 추진주체 거래금융기관 지점장
5.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

④위원회는 협동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규모 및 사업자금 조달능력
3. 공단 또는 시·도의 지원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공단지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사항

⑤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공단지사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사항

⑤실천계획의 심사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19조,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지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의 자격
3. 추진주체의 자격 및 운영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지원자금의 상환능력
5. 사업내용의 타당성
  - 가. 사업예정지 및 공장규모의 적정성
  - 나. 투자계획의 적정성
  - 다. 환경오염 방지계획
6. 기타 공단지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협동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협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내부규약 작성
2. 사업부지 또는 건물 구입계약
3. 추진주체결성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될 때에 협동화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④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승인서류 사본을 첨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실시) 법 제19조 및 영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조건부승인사항의 이행 및 실천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

사는 사업의 착수기간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사항)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을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지원 및 시설의 대여
2. 경영 및 기술지도
3. 연수 및 정보의 제공
4. 기술개발 및 도입지원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사후관리) ①공단이사장은 협동화사업 지원업체에 대하여 자금대출 종료후 2년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중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지원자금의 상환종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부도 등 사유로 협동화사업 참여업체가 3개미만이 된 경우 추진주체에 대체기업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 1]

**협동화사업의 종류(제14조 관련)**

구 분	내 용
집 단 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공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공 동 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협 업 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기술개발, 정보수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주택회보